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61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이해식・임미애・송기헌
김영배・박상혁・박균택
박희승・이주희・최혁진
염태영・이기헌・양부남
박정현・윤준병 의원
(14인)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 제도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임위원도 1인에 그치고 있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등 방대한 업무를 분야별로 책임 있게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하여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나, 선거사무 등에 대한 감사기구가 중앙선거관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선거사무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현행 1인인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여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내부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법제화하고 그 안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해 선거사무 전반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며, 각종 감사 결과 및 선거사무 등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1인에서 3인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명시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5조의6 신설).

라.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 및 조치, 선거 또는 국민투표 시 해당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에 선거관리평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심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임위원을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2. 시·도선거관리위원회: 1인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각급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근무한 자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7(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해당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평가분과위원회

2.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심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제5조(위원장) ① ----------------------------------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제6조(상임위원) ①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임위원을 둔다.
<신 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2. 시·도선거관리위원회: 1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각급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근무한 자
제15조(사무기구등) ① (생 략)	제15조(사무기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② ----------.
<후단 신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 ⑯ (생 략)	③ ~ ⑯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7(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해당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평가분과위원회 2.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심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